

김선화 / 4월+5월 / 기초 GS / 8회								응시인원
수강번호	문제 1	문제 2	문제 3	문제 4	문항 총점	석차	상위%	
537475	17	10	0	0	27	1	3.23%	31
539084	15	11	0	0	26	2	6.45%	
542403	15.5	10.5	0	0	26	2	6.45%	
537564	17	8.5	0	0	25.5	4	12.90%	
535325	20	5	0	0	25	5	16.13%	
539816	15.5	9.5	0	0	25	5	16.13%	
537436	14.5	9.5	0	0	24	7	22.58%	
539733	14.5	9.5	0	0	24	7	22.58%	
535647	15.5	7.5	0	0	23	9	29.03%	
539152	15	7.5	0	0	22.5	10	32.26%	
539709	15	7.5	0	0	22.5	10	32.26%	
537428	15.5	6.5	0	0	22	12	38.71%	
540015	11.5	10.5	0	0	22	12	38.71%	
539860	12	9.5	0	0	21.5	14	45.16%	
537725	9.5	11.5	0	0	21	15	48.39%	
539220	9.5	11.5	0	0	21	15	48.39%	
539628	16.5	4.5	0	0	21	15	48.39%	
538166	15.5	5	0	0	20.5	18	58.06%	
537439	12	7.5	0	0	19.5	19	61.29%	
540696	14	5	0	0	19	20	64.52%	
539206	8	10.5	0	0	18.5	21	67.74%	
539795	13.5	5	0	0	18.5	21	67.74%	
535161	12	5	0	0	17	23	74.19%	
538830	14.5	2	0	0	16.5	24	77.42%	
535333	11	5	0	0	16	25	80.65%	
538651	14	2	0	0	16	25	80.65%	
540226	9	7	0	0	16	25	80.65%	
535218	8	6	0	0	14	28	90.32%	
111111	11	2.5	0	0	13.5	29	93.55%	
538047	7	4	0	0	11	30	96.77%	
535255	6.5	2.5	0	0	9	31	100.00%	

김선화/4월/기초GS/8회/1,2번	채점자
	조은석

1. 채점기준

문제	설문	쟁점	배점	최고점	
1	1	이 사건 설계도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적극)	3	9	
		이 사건 설계도의 저작물 종류 - 건축저작물, 도형저작물	3		
		이 사건 카페의 저작권자 - 甲	3		
	2		양 건축물 사이에 의거관계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12
			양 건축물 실질적 유사성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乙의 이용행위 - 복제	2	
			丙의 이용행위 - 전시	2	
乙 소송 결과 - 법 제125조 제1항에 따라 인용			2		
	丙 소송 결과 - 법 제123조 제1항, 2항에 따라 인용	2			
2	1	이 사건 시조가 적힌 안내석을 세우는 것이 '공표' 행위인지 여부(적극)	2	2	
	2	저작자의 사후 인격권 보호방안 - 법 제14조 제2항, 법 제128조, 법 제137조 제1항 제3호	3	4	
		乙의 처벌 여부	1		
	3	A가 이 사건 초상화의 전시권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3	9	
		자신의 전시행위가 적법하다는 A 주장 타당 여부(소극)	3		
		법 제35조 제4항 위반 시 책임 규정 - 법 제138조 제1호	3		

2. 내용

마지막 GS 과정까지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3회차에 비해 너무나 발전된 모습들을 보여주셔서 뿌듯합니다. :D

① 기초GS 수업에서 받았던 점수와 등수는 모두 잊으시고, 기초GS를 통해서는 저작권법의 전체 내용과, 답안작성법만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점수와 등수는 정말 잊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저도 모든 과목 기초GS 수업에서 단 한 번도 좋은 점수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기초GS가 끝나고 혼자 복습할 때 실력이 급상승하기 때문에, 현재의 점수와 등수는 신경 쓰지 마시고 배운 내용을 잘 소화시켜서 5-6월 쉼터점프에 발돋움하시기 바랍니다!

② 실전GS 수업 듣기 전 잠깐의 복습 시간을 가지시고, 실전GS를 통해 ‘이미 기초에 나왔던 논점은 다시 써보는 연습, 새로운 논점은 기본 내용을 토대로 응용해서 써보는 연습, 최신판례 습득’ 하시면, 저작권법 PASS는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월 한 달 동안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강의를 들으신 모든 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20

[문제-1]

I. ~~출제~~ (1)

Q.5 perfect

1. '이 사건 출제'의 저작물성 조항(적용)

(1) 저작물 의미 (제조제인)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다.

(2) 창작성 판례기준(취체)

창작성이 인정되기 위해선 어떠한 작품이 관습의
상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 인공, 사상이나
감정이 대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하고
있어야 한다.

(3) 관공저작물의 구분(취체)

관공저작물은 가동적 저작물로서 관공물이 일반적 ~~판권~~
표현방법 등에 따라 가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을 나타
내고 있을 뿐이라면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창작성
개성이 드러나 있는 경우, 저작물로서 판권을 누 있다.

(4) 사안의 경위

이 사건 출제에 의하면, 이 사건 카피를 상복 및
하복 매거 비록이건 5각 표정면이 변화가 가해진
형태로, 사각각으로 분리되었고 등기사항을
하복매거 등에 특정한 등을 통해, 판권이 카피
건물로 실용적인 가능 하는 일반적 표현방법이다

good!

보지 않음, 甲의 독자적인 창조적 개성으로 창작성이 인정된다.

(9) 소결

이 사건 출제문 지각물로서 인정된다.

2. '이 사건 출제문'의 저작물 종류 - 권속 및 준경지각물

(1) 권속지각물 및 준경지각물 의의 (제 4항 ~~조~~ 제 1항 제 5호, 제 6호)

① 권속지각물은 권속을 및 권속을 위한 출제문 등

인간 사상과 감정이 토지 기타 공작물 시 미적으로 표현된

상각물이다 ② 준경지각물은 출제문 지로 등으로 표현된

인간 사상 또는 감정의 상각물이다.

(2) 사안의 성취.

① 이 사건 출제문은 甲의 인간 사상 및 감정이 표현된

상각물로서 ② 권속 지각물 및 준경지각물이다.

3. '이 사건 카페'의 저작권자 - 甲

(1) '이 사건 출제문'의 저작권자 - 甲

甲은 이 사건 출제문을 창작한 저작권자이다.

(2) '이 사건 카페'의 취급 - 이 사건 출제문의 복제물.

1) 복제(제 22조 제 2호)

인쇄·복사·등의 방법으로 원 저작물의 형식적으로

유형물이 생성된 저작물은 권속, 권속물의 경우

법 102 조까지
소결
이제
인정



1. 간혹을 위한 상대방이 따라 이를 사용하는 것이다.

2) 사안의 성격

이 사건 카피는 이 사건 상대방이 따라 사용된 것으로서, 이 사건 상대방의 복제물이다.

(3) 동일

이 사건 카피는 이 사건 상대방의 복제물이고, 이 사건 상대방의 저작권과 무에 이 사건 카피는 저작권자이다.

II. 범(2) 11.5 perfect

1. 저작권 침해 요건(사) 사

- ① 유출된 저작권이 존재하며 ② 상대방이 의란 이용행위이다
- ③ 의거성, 그리고 ④ 실질적 유사성을 요건으로 한다.

2. '이 사건 동등성의 의거성 판(복)'

(1) 판(복) 의거성 판(복) 방법(사) 사

대비태성이 되는 저작물과 상대방의 저작물과 주장은 기존의 저작물 에 의하여 저작되었어야 하는데, 저작권법이 의하여 보완받지 못하는 동등성 등에도 유사성이 있는지를 상각하여 판(복)한다

(2) 의거성 추정 방법(사) 사

- ① 의거관계는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이용,
- ②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 사이에 유사성이



인정의면 부를할 수 있다. ③ 특히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이 독립적으로 제작되면 같은 점에
이르러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다. 정으로 한자
위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러한 수정만으로 카피를
부를할 수 있다.

(3) 사안의 경우.

① 2 이 사건 블로그의 저작권과 무관하여 이 사건
카페를 관할한 자라, 기존의 저작물인 이 사건
블로그에 접근가능성이 있다.

② 4 7 이 사건 카페에 방문한 것을 기점으로, 관할한
주에게 1 2 이 사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459 460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85 486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497 498 499 500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510 511 512 513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1 522 523 524 525 526 527 528 529 530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 541 542 543 544 545 546 547 548 549 550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 559 560 561 562 563 564 565 566 567 568 569 570 571 572 573 574 575 576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585 586 587 588 589 590 591 592 593 594 595 596 597 598 599 600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619 620 621 622 623 624 625 626 627 628 629 630 631 632 633 634 635 636 637 638 639 640 641 642 643 644 645 646 647 648 649 650 651 652 653 654 655 656 657 658 659 660 661 662 663 664 665 666 667 668 669 670 671 672 673 674 675 676 677 678 679 680 681 682 683 684 685 686 687 688 689 690 691 692 693 694 695 696 697 698 699 700 701 702 703 704 705 706 707 708 709 710 711 712 713 714 715 716 717 718 719 720 721 722 723 724 725 726 727 728 729 730 731 732 733 734 735 736 737 738 739 740 741 742 743 744 745 746 747 748 749 750 751 752 753 754 755 756 757 758 759 760 761 762 763 764 765 766 767 768 769 770 771 772 773 774 775 776 777 778 779 780 781 782 783 784 785 786 787 788 789 790 791 792 793 794 795 796 797 798 799 800 801 802 803 804 805 806 807 808 809 810 811 812 813 814 815 816 817 818 819 820 821 822 823 824 825 826 827 828 829 830 831 832 833 834 835 836 837 838 839 840 841 842 843 844 845 846 847 848 849 850 851 852 853 854 855 856 857 858 859 860 861 862 863 864 865 866 867 868 869 870 871 872 873 874 875 876 877 878 879 880 881 882 883 884 885 886 887 888 889 890 891 892 893 894 895 896 897 898 899 900 901 902 903 904 905 906 907 908 909 910 911 912 913 914 915 916 917 918 919 920 921 922 923 924 925 926 927 928 929 930 931 932 933 934 935 936 937 938 939 940 941 942 943 944 945 946 947 948 949 950 951 952 953 954 955 956 957 958 959 960 961 962 963 964 965 966 967 968 969 970 971 972 973 974 975 976 977 978 979 980 981 982 983 984 985 986 987 988 989 990 991 992 993 994 995 996 997 998 999 1000 1001 1002 1003 1004 1005 1006 1007 1008 1009 1010 1011 1012 1013 1014 1015 1016 1017 1018 1019 1020 1021 1022 1023 1024 1025 1026 1027 1028 1029 1030 1031 1032 1033 1034 1035 1036 1037 1038 1039 1040 1041 1042 1043 1044 1045 1046 1047 1048 1049 1050 1051 1052 1053 1054 1055 1056 1057 1058 1059 1060 1061 1062 1063 1064 1065 1066 1067 1068 1069 1070 1071 1072 1073 1074 1075 1076 1077 1078 1079 1080 1081 1082 1083 1084 1085 1086 1087 1088 1089 1090 1091 1092 1093 1094 1095 1096 1097 1098 1099 1100 1101 1102 1103 1104 1105 1106 1107 1108 1109 1110 1111 1112 1113 1114 1115 1116 1117 1118 1119 1120 1121 1122 1123 1124 1125 1126 1127 1128 1129 1130 1131 1132 1133 1134 1135 1136 1137 1138 1139 1140 1141 1142 1143 1144 1145 1146 1147 1148 1149 1150 1151 1152 1153 1154 1155 1156 1157 1158 1159 1160 1161 1162 1163 1164 1165 1166 1167 1168 1169 1170 1171 1172 1173 1174 1175 1176 1177 1178 1179 1180 1181 1182 1183 1184 1185 1186 1187 1188 1189 1190 1191 1192 1193 1194 1195 1196 1197 1198 1199 1200 1201 1202 1203 1204 1205 1206 1207 1208 1209 1210 1211 1212 1213 1214 1215 1216 1217 1218 1219 1220 1221 1222 1223 1224 1225 1226 1227 1228 1229 1230 1231 1232 1233 1234 1235 1236 1237 1238 1239 1240 1241 1242 1243 1244 1245 1246 1247 1248 1249 1250 1251 1252 1253 1254 1255 1256 1257 1258 1259 1260 1261 1262 1263 1264 1265 1266 1267 1268 1269 1270 1271 1272 1273 1274 1275 1276 1277 1278 1279 1280 1281 1282 1283 1284 1285 1286 1287 1288 1289 1290 1291 1292 1293 1294 1295 1296 1297 1298 1299 1300 1301 1302 1303 1304 1305 1306 1307 1308 1309 1310 1311 1312 1313 1314

알려진 것보다, ② 그 밖에서 다수가
"이 사건 카페가 거의 '독점' 이 사건
상품에 대해 ~~연락~~ 연락", "이 사건 ~~상품~~
대상에 가까이 있는 큰이 사의 이 사건
카페에 갈 필요가 있다" 등의 기록 있다.

③ 이것으로 보아, '이 사건 카페'가 서울카페
할10 등에 선정되고, 지상파 채널에 소개될
수 있는 점, 무역 상각권 ~~포함~~ 포함 등
~~포함~~ 포함 형식이, '이 사건 상품'에 ~~반영~~
있는 ~~상각권~~ 상각권으로 인한 것으로 판명된다.

(3) 도표

이 사건 ~~도표~~ 도표는, 이 사건 ~~도표~~의 복제물인
이 사건 카페의 ~~상각권~~ 상각권으로 지어다.

4. ~~2차~~ 1차의 이용행위 검토 - ~~정당~~ 정당 및 진서

(1) ~~2차~~ 1차의 행위 - ~~정당~~ (제2조 제10호) 복제 (제2조 제2호)

~~공중에게 개방적으로 판매된 사의 ~~상각권~~ 상각권에서
정당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카페'라는 복제를
제공한 것으로, ~~2차~~ 1차 이 사건 ~~상각권~~ 상각권~~

것은 이 사건 복제를 모방하여 이 사건 ~~상품~~ 상품을
전통한바 복제행위를 하였다.

(2) ~~1차~~ 1차의 행위 - ~~정당~~ 정당 (제2조 제25호)



또한 이 사건 도용행위 등에 관하여 이 사건
판결을 전의 방법으로 당해가였다.

5. R과 P의 침해사건 및 심판결과

(1) R의 침해사건 - 복제권(제16조)

R은 저작권과 무관하게 이 사건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침해하였다.

(2) R에 대한 무의 손해배상청구결과 - 인용판결

1) 손해배상청구 (제15조 제1항)

저작권과 무관, 저작권법으로 침해한 R에게
손해를 청구할 수 없다.

2) R의 권리 침해 관련 예외(제23조)

R은 이 사건 카피의 건축방향을 각 알고 있었기에
이 사건 도용행위 전후에 손해에 대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3) 면책

무엇 R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상에서 인용판결 받는다.

(3) P의 침해사건 - ~~판결권~~ 전사권(제19조)

P는 무관하게 이 사건 침해사건을 전수권행위
복제권을 전사하여, 무의 전사권을 침해하였다

(4) P에 대한 무의 손해배상청구 및 손해배상청구결과 - 인용판결

제 23조 1항 및 2항에 따라 무의 전사권 범위가 P에게
침해의 전지 및 2항에 의한 위법성은 이 사건 도용행위



실용을 상상한다, 이점과이점의 나열할 것이다

<끝>



[문제-2]

115

I. 설문 (1)

1. 공표권의 의미 (2조 25호)

'공표'란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한 경우를 말한다.

2. 최초공표 원칙 - 판례

"공표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을 공표하지 않은 경우에 타인이 저작자의 동의 없이 공표함으로써 문제가 되는 권리이다"

3. 사안의 해결

甲은,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이 사건 시조를 작성하였으나 숨겨두어 공중에 공표하지 않았고, 乙은 이 사건 시조가 적힌 안내책을 세워 그 내용을 ~~공표한~~ 것이다.

II. 설문 (2)

1. 저작자 사후 인격권 보호방안

(1) 저작자 사후 저작인격권 침해금지 (14조 2항)

저작자 사후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가 생존한 유포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다만,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할 것이 아니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저작자 사후 인격적 이익 보호 (128조)



저작과 사후, 유족은 14조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 123조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고의 또는 과실로 14조2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127조의 명예회복청구가 가능하다.

2. 2의 행위가 처벌받지 - 소극

2은 甲의 업적을 알리기 위해 甲의 생가를 보도·홍보하고, 역사적 인물인 甲을 소개하기 위한 의도로서 안내석을 세운 것을 보아도 14조2항 단서규정에 의해 처벌받지 않는다.

Ⅳ. 실문 (3) **6.5**

1. 이 사건 초상화의 성질 - 미술저작물 (4조1항 4호)

A는 丙의 얼굴을 색채를 통해 미적으로 표현하였으므로, 이 사건 초상화는 미술저작물이다.

2. 미술저작물의 저작권권 제한

(1) 의의 (35조 4호)

위탁에 의한 초상화의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가 없는 때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

(2) 위배 배금 (138조 1호)

500만원 이하의 배금에 처한다.

(3) 위탁에 의한 초상화의 권리귀속

① 창작과 원작에 따라, 표가인 A에게 저작권이 귀속된다.

② 소유권은 위탁자인 丙에게 귀속된다.

3. A 주장의 타당성 - 부담 *good*

A는 비록 초상권의 저작권과이지만, 35조 4항에 의해 위
특정한 개의 증의 양이 이행할 수 없으므로 그 주장
은 부당하다.

4. A의 저작권법 위반사항과 그 책임

A의 초상화 '전시'행위는 138조 1항에 의해, 500만원
(35조 4항 위반액)

이하 벌금에 처해질 것이다.

- 끝 -

<문제2>

11.5

I. 서문(1)의 해설 2

1. '공표'의 의미 - 법 25호.

공표란 저작물을 전시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라 저작물은 반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사안의 경우.

① 같은 '이 사건 시권'을 ~~작성~~ 시권가 격된 안내서를 세웠다.

② 저작물을 그어로 전시한 것은 아니지만, ~~책~~의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되어 있는 저작물을 복제하였다.

③ 따라서 그 저작물을 안내서는 전시함으로써 공중에게 공개하는 행위는 하려는 바, 공표에 해당한다.

3. 결론

그의 행위는 공표 행위에 해당한다.

II. 서문(2) 2

1. 저작자 사후 인정된 보존행위 - 법 14조 2호

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복권의 도리가 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행위의 성격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저작권의 역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되는

성준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개의 행위가 처벌된 죄의 죄역 - 순극

(1) 공표권 침해역 - 직극

1) '공표권'의의 - 법(142)항

저작권은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한 것은 저작권 권리를 가진다.

2) ~~공표권 신장역~~

~~현재 이 사건 시판은 아님~~

2) 사안의 경우

①은 이 사건 시판은 공표하지 않았으나, 2의 무단으로 공개하였는 바, 공표권 침해에 해당한다.

(2) ~~공표권 침해역 - 직극~~ 법(142)항 단서 해당역 - 직극

①은 권선시어에 시판을 작성하였으나, 실범의 위형을 느껴 출판을 못하고, ② 이에 따라 작성자와 단행가 는 공표하는 것은 무의 명의를 훼손한다고 보는 어렵다. ③ 따라서 법(142) 2항 단서에 해당한다.

(3) 순극

법(142) 2항 단서 따라 공표권이 침해될 행위로 보지 않는 바, 권은 처벌되지 않을 것이다.

7. 결론(3)

7.5



상징과주위 (18102)
상징사건
In good!

1. A극장의 타당성 -복합.

(1) 작성이 적당이라는 극장 -타당

'이 사건 현상'은 A의 사상·또는 관념을 표현한 문장을 써서 A가 저작권자에 해당한다.

(2) 권리권이 있는지 여부 - 극장 (저작권인디, 권리제한)

1) A와 B의 차이

A는 이문서각문을 복각한 원작자이고, B는 저작권자이다

2) 이문서각문 권리 또는 복제 - 저작권

원작에 의한 현상 또는 이와 유사한 사문서각문의 경우에는 위문서각문 복제하여 이를 이용할 수 없다.

3) 사안의 경우.

① '이 사건 현상'은 B의 원작에 의한 현상에 해당하여,

② B가 이를 하였으므로, 원작자의 동의가 필수로 되어 어렵다.

③ 따라서 A는 이 사건 현상을 이용할 수 없다.

(3) 순정

A는 이 사건 작성 현상의 저작권에 관하여 법 17조의 권리를 가지나, 법 35조의 무항에 의해 작성권의 이용이 제한되는 바, A의 극장은 복합이다.

2. A의 저작권법상 권리 범위와 범위

(1) 복제 - 법 138조 항 1

법 35조 4항은 권리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

러한다.

(2) 사망의 경우

A는 소득 35억 4천을 위반한 과로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하 여백-

